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7
------	-----

2019. 6. 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8일, 이정인 의원(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6.17.)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정인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조례 여럿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들고 있는 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의 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9조).

II .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한 “심신장애”가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나. 심신장애와 심신쇠약의 정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장애(心神障礙)’는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뜻하며, ‘심신쇠약(心身衰弱)’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음.
-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¹⁾로 구분하고 있음.

- 대법원 관례에서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대법 2018도7658).
- 이처럼 ‘심신장애’는 법률용어로 정립되어 있지만 ‘심신쇠약’은 별도의 정의가 없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허약해진 상태를 뜻해 심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심신장애를 별도의 위원의 해촉 사유로 들지 않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음.

다. “심신장애”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선(안 제2조~제9조)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중 “심신장애”나 “심신의 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²⁾과 유엔의 “장애인의

1) 심신장애는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심신미약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심신상실로 나뉨. 이는 법률학상의 개념이며 의사가 아닌 법관의 판단으로 판정됨.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리에 관한 협약³⁾(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나 장애정력을 이유로 공적생활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정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위원의 퇴직 요건 중 장애인 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한 바 있으며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역시 ‘장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참고자료2].
- 서울시의회도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12건 상정되어 11건이 개정된 바 있음[참고자료3].
- 따라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요구에 맞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정비하는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며, 조례 간의 표현을 일원화하여 조례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제정안은 위원의 해촉사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심신상의 장애”를 포함한 일부 조례를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본칙에 추가 반영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4)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하였음.

〈 수정의견 〉

조 례	조문 번호	현행	수정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장기간의 심신쇠약
	제36조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심신상의 장애가	심신쇠약이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요구에 맞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일괄정비조례안에 미반영된 조례를 추가 반영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신설).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37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요구에 맞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일괄정비조례안에 미반영된 조례를 추가 반영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신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하고, 제36조제5항제1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심신상의 장애가”를 “심신쇠약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p> <p>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하고, 제36조제5항제1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로 한다.</p>
<p><신 설></p>	<p>제11조(「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p> <p>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5호 중 “심신상의 장애가”를 “심신쇠약이”로 한다.</p>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심신장애”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 중 “심신의 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호 중 “심신의 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하고, 제36조제5항제1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심신상의 장애가”를 “심신쇠약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